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 등을 「고등교육법」 및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이 총장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부속기관은 번역대학원대학에 국가가 출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법인인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3조의제3항 삭제 등).

수정주요내용

- 가.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을 「고등교육법」 및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할 때, “총장”을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2항 후단 신설).
- 나.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2제3항 삭제 및 제14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안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비”를 “출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13조의2(번역대학원 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 <u>번역대학원대학</u>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후 단 신설> ③ 정부는 번역대	제13조의2(번역대학원 대학의 설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 ----- . 이 경우 “총장”은 “한국 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삭 제>

제14조(<u>경비</u> 보조) 정 부는 한국문학번역 원의 운영 또는 사 업에 필요한 경비 를 <u>보조</u>할 수 있다.	<u>학원대학의 설립 · 운영에 드는 경비 에 충당하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 서 번역대학원대학 에 출연금을 지급 할 수 있다.</u> 제14조(경비 보조) (현행과 같음)	제14조(<u>출연 또는 보 조</u>) ----- ----- ----- -- <u>출연 또는 보 조</u>-----.
---	---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76
----------	------

발의연월일 : 2024. 10. 14.

발 의 자 : 김윤덕 · 민형배 · 정동영
양문석 · 신영대 · 윤준병
강유정 · 박희승 · 이춘석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 등을 「고등교육법」 및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이 총장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부속기관은 번역대학원대학에 국가가 출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법인인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3조의제3항 삭제 등).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비”를 “출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u> <u>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u> <u>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u> <u>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u> <u>「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u> <u>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u> <u>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u> <u>있다.</u> <u>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u> <u>· 교원 · 이수과정 · 학위수여에</u> <u>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u> <u>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u> <u>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u> <u>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u>
제14조(<u>경비</u> 보조) 정부는 한국문 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u>보조</u>할 수 있다.	제14조(<u>출연 또는 보조</u>) ----- ----- -----<u>출연 또는 보</u> <u>조</u>-----.